

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7.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인 “사회복지위원회”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를 규정 조정위원회로 개정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○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7조)

- 기존 :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
- 변경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-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<u>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----- -----<u>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